<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6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를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로 하고, 같은 목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내용 1 : 적합인증 기자재 형식기호 변경 가능

지금까지 적합인증 기자재의 변경신고의 경우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의 조건 과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적합인증을 받은 기자재에 무선사양추가를 변경사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 년 4 월 18 일부터 기존의 적합인증 기자재의 인증번호 그대로 추가되는 무선사양에 관하여 신규 인증진행이 아닌 변경신고 및 일부 시험 진행으로 기존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 2 :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고시에 따라 라벨 또는 제품의 포장 또는 설명서등에 제조시기를 제조연월로 표기하여야 했습니다. 2023 년 4 월 18 일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제조시기 표기방법을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로*** 변경되어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시 :

1. *제조연월일 표기 (기존과 같음 ex: 제조 2023.04.26)*
2. *로트번호 (제조연월조합으로 제조자에서 관리되는 번호 ex: 20230426001)*
3. *제조연월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입증할 수 있는 표시(품질문서로 입증가능한 번호 ex:20230426-1)*